

사랑과 신뢰, 번영과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회

월간 입법동향

- 2026년 2월호 -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 1. [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 2.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6

□ **타 시·도 입법동향**

- 1. [제정]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 8
- 2. [제정]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 10

□ **국회입법**

- 1. [이슈와 논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기관은 왜 지체되고 있나 13
- 2. [NARS info]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 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19

□ **국외동향 및 시책**

- ◇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덤퍼이크 삭제 의무화법 (TAKE IT DOWN Act) 22

□ **국외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사례**

- 주민참여 관련 입법사례 •
- 1. [미국 뉴욕]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 조례 (뉴욕시 현장 제76장) 30
- 2. [케냐 마쿠에니] 케냐 마쿠에니군 주민참여 거버넌스 조례 36

□ **유권해석 동향**

-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5건 (광역시·도 1건 / 기초 시·군·구 4건) 47

□ **경기도의회 주요 입법예고**

- ◇ 의원발의 22건(제정조례안 15건, 개정조례안 7건) 66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31.] [법률 제21253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20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 위원회 :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등
- ▶ 조 례 :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 이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은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이러닝센터 지정·운영 등 주요 정책 영역에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이러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됨. 이는 이러닝 정책의 추진 주체를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적 환경을 전제로 볼 때, 현행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평생교육법 체계를 기반으로 도민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제공과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러닝을 산업 진흥 또는 지역 기반 기술·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동 조례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구축·운영, 콘텐츠 제공, 학습자 지원 등 '학습 서비스' 중심의 규율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러닝 기업·산업·전문인력·창업 지원사업과 같은 사항을 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온라인 평생학습 조례의 목적과 구조를 확장·변형하는 방식보다는, 이러닝 산업 진흥과 활용 촉진을 정책목표로 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율 대상과 정책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이러닝을 경기도 지역 산업 정책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러닝 관련 기업·종사자·창업자 및 기술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로 설계하여 이러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기술·콘텐츠 개발 촉진, 지역 기반 이러닝센터 운영 및 기관과의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법률에서 구체적인 조례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상위법의 규정을 반복하거나 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하기보다는, 법률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정책 수행 여지를 지역 차원의 지원·육성·연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조례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통해 상위법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선택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요컨대, 이번 법률 개정은 이러닝 산업 및 활용 촉진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온라인 평생 학습 조례의 개정 방식보다는 정책 수요와 행정 여건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부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

또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 나.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추가하고,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의3제2항·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 다.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함(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은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서, 특히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한 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과정에서 현장 판단 기준을 설정한 점을 주목할 만함.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사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온 청소년복지 정책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정리한 성격의 개정으로 볼 수 있음.

○ 먼저, 고립·은둔 청소년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법 제2조제5호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교육·관계증진 프로그램, 학교 복귀·적응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16조의2 내지 3)은 그간 위기청소년 범주 내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지던 고립·은둔 청소년을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법률상 명확히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영역을 청소년복지 정책의 한 축으로 다루는 데 있어 제도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원대상, 시행계획, 지원사업, 전담조직 및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는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상담, 학업·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어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즉각적인 조례 개정 반영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며, 향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시행계획 및 사업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청소년부모와 관련하여, 이번 법률 개정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보완한 점이 주요 내용임. 이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선언적 수준에 두기보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적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보조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정의(제2조), 도지사의 책무(제3조), 지원 계획 수립(제6조), 실태조사(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제8조) 및 구체적인 지원사업 유형(제9조)까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해서는 도 차원의 독립된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 특히 동 조례 제9조는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지원, 청소년부모의 학업·직업교육 지원,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주거 및 자립 정책 지원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서 추가·구체화된 청소년부모 지원 내용은 기존 조례의 규정 범위 내에서 수용·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보임.
-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에 따른 복지지원 집행 절차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현행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의 지원사업 규정에 해당 절차를 수용하는 수준의 부분적 조문 보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타 시·도 입법동향

1

[제정]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

[시행 2026.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9973호, 2026. 1. 5., 제정]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정이유

- 서울시와 자치구, 출연·출자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 행사가 시구나 지역 별로 중복되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중복개최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 중복개최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이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문화행사 계획의 사전등록 및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 라. 문화행사 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시·소속기관·출연·출자기관·자치구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각각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시기·장소·주제 측면에서 중복 개최되면서, 예산 비효율과 행정력 분산, 시민 선택권 저하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회계 항목이나 개별 부서 단위 관리만으로는 파악·조정이 어렵고, 실제로 다수 지자체에서 유사 행사 난립, 관람객 분산, 홍보 중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뚜렷함.
-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 통제하거나 행사 개최를 제한하기보다는, 문화행사 정보를 사전에 등록·공유하고 중복 우려가 있을 경우 협의를 유도하는 ‘정보공유·협력체계’ 구축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음. 이는 문화행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정과 협력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으로, 강행 규정보다는 행정적 조정 메커니즘을 택한 점이 특징임.
- 특히 적용대상을 자치구·산하기관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

받는 민간단체까지 포함하면서도,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수준으로 설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율 한계를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는 서울시의회 검토 과정에서도 확인되듯,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에 대해 조례만으로 실질적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경기도가 광역-기초 간 협력 체계를 설계할 때도 동일하게 고려해야 할 쟁점임.

- 한편 조례에서 규정한 협력협의회, 자원공유, 공동·통합행사 전환 유도 등의 내용은 문화행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자체 운영 사례를 보면 행사 성격·규모·주관 주체가 매우 다양하여 일괄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기존 축제위원회·평가체계와의 기능 중복 가능성, 자원 관리 비용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도 새로운 기구나 제도를 추가하기 보다는 기존 축제·문화정책 체계와의 연계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함.
- 경기도 입법 시에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되, ‘중복개최 방지’를 전면에 내세운 통제형 조례보다는, 문화행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복·경합 우려가 큰 공공부문 행사부터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아울러 이미 운영 중인 축제 평가, 보조금 성과관리, 문화정책 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행정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요컨대, 서울시 조례는 문화행사 운영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시·군 간 문화행사 조정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강제보다는 협력과 인센티브 중심의 관리 프레임 도입이 되,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제정]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시행 2026. 1. 2.] [경상남도조례 제5969호, 2026. 1. 2., 제정]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블루카본’으로 불리는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에 비해 탄소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르고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30%를 흡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경상남도 해역 대부분의 조간대 및 해조류, 패류 등은 정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도내 연안 탄소흡수원에 대한 규정과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블루카본을 이용한 탄소중립에 앞장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연안 탄소흡수원의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사·연구 및 보호·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라.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업무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동향을 보면, 탄소흡수원 관련 제도는 대체로 ‘산림(그린카본)’과 ‘연안(블루카본)’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조례로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연안과 산림을 하나의 조례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한 사례는 없음.
- 한편, 경기도는 산림자원과 연안지역을 함께 보유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행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의 정책 범위를 ‘탄소흡수원’으로 확장하여 연안 탄소흡수원까지 포괄하는 통합개정 방안을 검토할 정책적 여지가 있음. 다만 이러한 통합개정은 연안 관련 조문을 단순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조례 체계가 산림·연안 모두에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는 접근이 전제되어야 함.
-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의 경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전·복원 중심의 관리대상에 그치지 않고, 관리와 활용을 함께 고려한 정책영역으로 설정한 점을 주목할 만함. 특히 연안 탄소흡수원은 산림에 비해 현황자료와 성과 검증 기반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상남도 조례가 분류·관리·모니터링을 강조한 것은 연안 분야 정책 설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가 산림 및 연안 지역 통합개정을 추진할 경우에도, 연안 탄소흡수원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과 관리체계 구축을 우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정책 확장을 도모하는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경상남도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배출권 제도나 기업 참여 등과 연계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데, 이를 경기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조례의 범위가 탄소시장·기업유치 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경기도는 통합개정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 요소를 구체화하기보다는, 민·관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원칙 수준 정도로만 설정하고, 배출권·시장 연계는 상위법령 및 제도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 법체계 측면에서 보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탄소흡수원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 운영과 정책수단은 산림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 현행 조례 역시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 반면 연안 탄소흡수원은 별도의 직접적 규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연안관리법」 등 연안 환경·공간 관리 체계 속에서 간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통합개정 시에는 산림 분야는 탄소흡수원법과의 연계를 유지하되, 연안 분야는 연안관리 체계와의 연계 근거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법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통합개정의 구조 설계에 있어 중요한 점은 산림과 연안에 대한 공통적 규율 및 분야별 특화를 병행하는 내부 구조 재편에 있음. 즉 목적·정의·책무 등 총칙은 ‘탄소흡수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계획·실태조사·사업 조항에서는 산림과 연안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조례 안에서도 집행 단계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특히 종합계획과 실태조사는 하나의 틀을 유지하되, 내용 구성에서는 산림·연안 분야별 항목을 구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사업·지원수단 역시 공통 사업과 산림·연안 특화 사업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산림 분야는 기존 조례가 강점을 가진 조림·산림경영·재해 대응 등을 유지하고, 연안 분야는 조성·복원·관리·모니터링 등 관리 중심 사업으로 구성함으로써, 조례 전체의 균형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구조는 경기도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 자료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관리·탄소흡수 기능 강화 방향에도 부합함(경기연구원, 「경기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2024. 참조).
- 한편, 연안 탄소흡수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입법사례를 보면, 연안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을 위한 기본 틀을 비교적 간명하게 제시하고, 관리 중심 사업유형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경상남도 조례의 ‘활용’ 요소를 초기부터 폭넓게 도입하기에 부담이 있는 경우 참고할 만한 사례임. 즉, 부산 사례는 연안 관리체계를 우선 정비한 뒤, 성과와 데이터 축적에 따라 정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줌.

- 종합하면, 경기도가 현행 산림탄소흡수원 조례를 ‘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로 확장 개정하는 방안은 정책적 타당성이 있으나, 경상남도 조례가 시사하듯 연안 탄소흡수원은 관리체계와 검증 기반이 핵심이므로, 산림 및 연안지역 통합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① 산림·연안의 정의와 대상 구분을 명확히 하고, ② 계획·조사는 분야별로 분리해 집행력을 확보하며, ③ 사업은 공통과 특화를 구분해 균형을 유지하되, ④ 시장·배출권 연계 등 활용 요소는 원칙 수준에서 신중히 다루는 방향이 가장 조화로운 입법 전략으로 판단됨.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왜 지체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439호 (2025. 12. 9.)

역대 정부는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정비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고, 현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이관 추진 실행계획의 수립, 인력·재정 등의 동시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광역적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I. 논의 배경

2025년 8월 7일,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 정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¹⁾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의미한다.²⁾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 간에 기능이 유사 및 중복되어 행정 비효율성과 더불어 자치권 침해란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국정과제로 삼았으나, 그 정비 실적은 미흡했다. 이 글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 이관³⁾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기준은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이유는 사무 중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성과 특수성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연도별 설치 현황을 보면, 2000년 전국에 6,650개에 달했던 기관의

수는 2004년 4,680개, 2005년 3,668개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000개~5,200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⁴⁾ 2024년 12월 31일 기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5,079개가 있으며, 이 중 1차 기관은 255개, 2차 기관은 830개, 3·4차 기관이 3,994개이다.⁵⁾

[그림] 특별지방행정기관 연도별 설치 현황



※ 자료: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5.10.23.)」 재구성함.

기관의 유형별로 보면,公安행정기관이 2,752개(54.2%)로 가장 많았고 현업행정기관이 1,748개(34.4%), 기타행정기관이 319개(6.3%), 세무행정기관이 212개(4.2%), 고용행정기관이 48개(0.9%) 순으로 나타났다.

公安행정기관 중에서 경찰청(지방경찰청 등)이 2,322개이고, 법무부(지방교정청 등) 192개,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등) 141개, 검찰청(고등검찰청 등) 66개, 국토교통부(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31개 순이다. 현업행정기관은 우정사업본부(지방우정청, 우체국 등) 1,748개가 있다.

기타행정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등) 48개, 통계청(지방통계청 등) 40개, 산림청(지방산림청 등) 32개,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 등) 26개,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등) 26개,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5개, 질병관리청(국립검역소 등) 24개,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17개, 기상청(지방기상청 등) 16개, 병무청(지방병무청 등) 14개, 환경부(지방환경청 등) 14개, 산업통상부(광산안전사무소 등) 11개, 조달청(지방조달청) 11개, 공정거래위원회(지방공정거래사무소) 5개, 원자력안전위원회(지역사무소) 5개,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촉구 :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2025.8.7.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2호.
 3) 지방이관은 이양, 위임, 위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 수의 증감 폭이 컸던 사유를 살펴보면, 2003년 6,577개 → 2004년 4,680개(파출소 감축 등) → 2005년 3,668개(철도청 폐지 등) → 2006년 4,492개(우체국, 지구대 신설 등)이다.
 5) 특행기관의 경우 그 기능에 따라 1차 기관은 주로 기획 및 관할구역 내 업무총괄을, 2~4차 기관은 1차 기관이 제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과기부의 부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특행기관으로는 지방우정청(2차), 우체국 등(3·4차)이 있다.

행정안전부(이북5도) 5개 순이다.

세무행정기관에는 국세청(지방국세청 등) 162개, 관세청(지역세관 등) 50개이다. 고용행정 기관에는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등) 48개이다.

[표]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유형별·기관별)

(2024.12.31.기준)

유형별 구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수(개)				정원(명)
	소계	1차	2차	3·4차	
고용(고용·노동)	48	6	42	-	7,078
세무(국세·관세)	212	41	149	22	24,671
공안(법무·경찰·경철·해양 등)	2,752	88	455	2,209	178,595
한업(우정)	1,748	-	9	1,739	32,207
기타(보훈, 식약, 국토, 해양 등)	319	120	175	24	12,137
합 계	5,079	255	830	3,994	254,688

유형	기관별 구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수(개)				정원(명)
		소계	1차	2차	3·4차	
고용 행정	고용노동부	48	6	42	-	7,078
세무 행정	국세청	162	7	133	22	19,892
	관세청	50	34	16	-	4,779
	소 계	212	41	149	22	24,671
공안 행정	경찰청	2,322	18	259	2,045	133,668
	국토교통부	31	1	8	22	501
	검찰청	66	6	18	42	10,038
	법무부	192	58	131	3	22,203
	해양경찰청	141	5	39	97	12,185
	소 계	2,752	88	455	2,209	178,595
한업 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1,748	-	9	1,739	32,207
기타 행정	공정거래위원회	5	5	-	-	164
	국가보훈부	26	5	21	-	862
	국토교통부	48	8	31	9	1,934
	기상청	16	7	9	-	529
	병무청	14	11	3	-	1,474
	산림청	32	5	27	-	729
	산업통상부	11	11	-	-	107
	식품의약품안전처	25	6	19	-	896
	원자력안전위원회	5	5	-	-	39
	조달청	11	11	-	-	441
	중소벤처기업부	17	13	4	-	417
	질병관리청	24	-	13	11	520
	통계청	40	5	35	-	1,390
	해양수산부	26	11	11	4	1,258
	행정안전부	5	5	-	-	45
	환경부	14	12	2	-	1,332
	소 계	319	120	175	24	12,137
합 계	5,079	255	830	3,994	254,688	

※ 자료: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5.7.21., 2025.11.6.)」, 재구성함.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현황과 한계

1. 공공일차의로 전담부서의 부재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방향을 보면,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이 담당토록 하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려면 그 기능이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⁶⁾ 특히 지방이관시 고려할 기준으로 주민편의성, 지역 현저성, 지역경제발전 및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성이 있다.⁷⁾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역대 정부마다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이다.⁸⁾

대표적인 이관 사례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하고자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⁹⁾을 제주도로 이관하였다. 당시 7개 기관의 사무가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실제로 전환된 인원(정원기준)은 126명이고, 이체된 예산 규모는 758억 원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토·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3개 분야에서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일부 집행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였다. 당시 208명(식·의약품 101명, 국토·하천 48명, 해양·항만 59명)의 인력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이후 정부에서는 정비 실적이 미흡했다.¹⁰⁾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국정과제와 함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포함했으나, 구)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34개 이양사무 의결만 하고, 실제 이양 실적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 과제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선정했다. 2020년 2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¹¹⁾을 제정했는데, 법안 마련시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사무를 포함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수용되었다. 2022년 이후 제2차 지방일괄 이양¹²⁾ 관련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일부 사무만 이양됐다.¹³⁾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했는데, ‘특별지방행정

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8)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백서」, 2017, p.129.

9) 7개 기관은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제주 환경출장소, 제주 보훈지청,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제주지방 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이다.

10) 행정안전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5.11.6.를 바탕으로 작성함.

11) 법률명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다.

12) 2차 지방일괄이양법이라 부르지만, 1차 같이 한 개 법안이 아니라, 발의된 법률안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12개 개정 법안을 국회 소관 위원별로 심사하는 형식이며, 따라서 법안별로 본회의 통과 시기가 다르다.

13) 이양 사무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리나업 등록 및 사업자 관리 등 사무 8개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관리 관련 1개 사무이다.

기관 기능 정비'가 중점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TF('23.4~'24.2)」를 운영했고, 이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비기능을 맡았다. 그러나 실제 이양이 확정된 사례가 없었다.

2025년 6월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123개 국정과제」에서 <52번.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에 '국가사무 지방이양'이란 제안은 있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과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¹⁴⁾

그동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어려웠던 원인으로 첫째,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대처인데, 지방사무소의 정비로 인해 조직 규모 및 권한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기관 관련한 입법과정의 어려움도 있다. 기관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지방의 입장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보장이 명확하지 않은 조건에서 지방기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¹⁵⁾

IV 입법·정책적 과제

1. 지방이관을 위한 추진 및 실행계획 수립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성공하기 위해서 정권 초기에 추진 및 실행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 지방이관의 경우 중앙과 지방간 협의와 함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시·도가 계속 지방이관을 요구해 온 분야는 ① 국도·하천(지방국토관리청 등), ② 해양·항만(지방해양항만청 등), ③ 식·의약품(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④ 환경(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등), ⑤ 고용·노동(지방고용노동청 등), ⑥ 중소기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6개 분야이다.¹⁶⁾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이관이 추진되어야 할 분야와 사무를 선정하고, 추진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인력·재정 등의 동시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있어 대상 기관의 사무와 함께 자원과 인력 등이 지자체로 동시 이관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인력 측면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기관 이관이 안정될 때까지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등을 통해 정비 이후의 통일성·전문성 확보 대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재원 특성을 반영한 이관 방안도 필요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반회계 인건비는 지자체 이양이 가능하나, 특별회계·기금은 목적이 제한된 정책사업비로 단순 이양이 불가하고 위임(국고보조금) 방식만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⁷⁾

3. 지역으로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모색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이관이 확정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이관하기 위해 「(가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혹은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안¹⁸⁾ 추진계획에 함께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다수의 법률을 한 번에 개정하는 일괄입법 방식은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0년 행정부와 입법부, 여·야 의원들의 협의 하에서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담은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시 총괄 책임은 국회운영위원회가 맡고,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¹⁹⁾

4. 광역적 사무는 광역연합인 특별지자체에 이관

특정 권역을 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설립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²⁰⁾에 이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지방이관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무가 있는데, 사무의 범위가 단일 행정구역 단위를 넘는 권역 단위로 존재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환경 분야에서 물관리 지원, 수질 총량관리, 하천관리, 대기환경, 수질 보전 및 관리 권한 등은 시·도 단위의 관할권 밖에서 업무의 범위 및 효과가 미치는 사무로 초광역연합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²¹⁾

2024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충청광역연합이란 특별지자체를 설립했다.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고자 한다.

14)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 p.88.

15) 제주도는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국가 환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성식, 「제주보훈청, 중앙정부로 환원 요청…국비 지원 크게 줄어」, 『연합뉴스』, 2022.11.9.).

1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촉구: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2025.8.7.

17) 김홍환, 「재원 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방안」, 『이슈페이퍼』 제9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p.12.

18) 현 정부의 국정과제 <52번.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에 권한이양 확대를 위해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제안했다(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 p.88).

19) 하혜영,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65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20)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

21) 김수연 외, 『초광역지역연합 대상 특혜기관 등 국가권한 이관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2, p.223.

◇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제95호 (2025. 12. 26.)

Overview

미등록 아동을 아동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는 한국 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입법·정책적 과제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모의 불법체류를 유감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양가적 관점에서, 그간 정부의 대응 추이와 주요 국가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미등록 아동에게 우선 필요한 정책 과제들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과제들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과 정책 딜레마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 사회에 실재하지만, 미등록이라는 지위 때문에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법적 지위에 따른 권리 보장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음



입법·정책적 과제

- ▶ 아동의 보호는 한국 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입법·정책적 과제
- ▶ 부모와 정부의 방임 상태를 해소 필요

한국 사회의 목표

- ▶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이라는 목표는 외국인 체류 권리라는 목표와 상충, 관련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정책 딜레마 발생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미국·유럽

- ▶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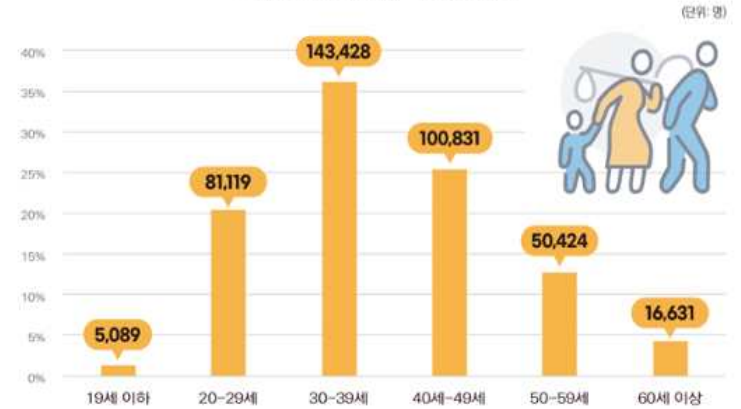
한국

- ▶ 체류 외국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정

법무부 연구과제로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추정했던 시범적 접근에서는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잔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가 최소 5,295명에서 최대 13,239명으로 추산된 바 있음

- ▶ 2024년 출입국 실태를 통해 드러난 불법체류 이주아동 수가 2017년(5,279명)과 유사하지만, 그간의 불법체류 외국인인과 불법 체류유류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삼기 추정치를 초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연령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024) |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5.6, p.85.

주요 국가 사례

주요 국가들은 체류권, 교육권, 건강권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음



미국

- ▶ 외국인 미성년자 발달·구제·교육(DREAM) 법안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 조치(DACA)'는 중단된 상태임
- ▶ 미등록 이주아동은 초·중등 교육과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 일부 지자체가 제한적인 건강보험이나 보육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



일본

- ▶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재류특별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립 의무교육과 예방접종과 같은 일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프랑스

- ▶ 예외적·인도주의적 사유 등에 따른 체류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체류 허용을 받을 수 있음
- ▶ 미등록 이주아동은 교육 그리고 거주/소득 요건에 따른 국가 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독일

- ▶ 사실적/법적 사유로 추방 불가 시 일시적인 추방 정지를 의미하는 관용을 부여하고 있음
- ▶ 특정 요건 충족 시 '체류기회권' 부여 후 체류허가로 연결될 수 있음
- ▶ 미등록 이주아동은 교육과 응급 의료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추이



정부의 대응

- ▶ 교육권 확대(초·중등 입학 허용)
- ▶ 통보 의무 면제(유치원, 학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 ▶ 체류자격 부여 조치(국내 출생에서 장기 체류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 ▶ 지방자치단체장의 미등록 이주아동 발굴
 - :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아동을 등록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2023년 | 경기도 시흥시 2024년 | 전라북도 남원시

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와 부모의 불법체류 유발 방지라는 양가적 관점에서, 국내 입법·정책 대응 추이와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3가지 방향의 대응 방향을 제안함

체류자격 부여 제도 상설화

- ▶ 부모가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아동을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체류자격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의 한시적('28.3.31.까지) 제도를 상시화함

아동 보호 필수 권리 서비스 제공

- ▶ 제도의 상설화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아동에게 건강권(응급의료 및 예방접종), 교육권(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안전권(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등 아동 보호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향후 과제

- ▶ 출생등록권과 보육권 보장은 해당 제도의 도입이 초래할 논란과 파생 효과를 고려할 때 더욱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국외동향 및 시책

◇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 (TAKE IT DOWN Act) ◇

국외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4호[통권 제287호] (2025. 12. 9.)

- ◆ 미국 연방의회는 2025년 5월 19일에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활용된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초의 연방 법률이다. 법률 제정 즉시 시행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과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행정규제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이번 법률은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삭제 절차를 제도화하고 플랫폼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 온라인상 비동의 딥페이크 영상물 게시를 금지하고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삭제요청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하고 그 복제본 삭제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
- ◆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영상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향후 우리의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미국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제어

미국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딥페이크 영상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삭제 절차, 플랫폼의 삭제 의무

I. 도입

-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기술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과 촬영물 유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¹⁾
 - 주(州) 차원에서는 전체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비동의 포르노물’(nonconsensual pornography) 또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라 불리는 ‘비동의 성적 영상물’(nonconsensual intimate images)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²⁾
 -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딥페이크 규제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특히 여성·아동·청소년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미(全美) 차원의 일관된 규제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이에 미국은 2025년 5월 19일에 「웹사이트 및 네트워크상 기술적 딥페이크 중지를 위한 법률」(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일명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이하 ‘동법’)을 제정했다.³⁾ 동법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한 최초의 연방 법률이라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⁴⁾
- 동법의 핵심적 규제 대상물은 딥페이크 영상물인데, 동법은 이를 ‘디지털 위조물’(digital forgeries)이라고 칭하고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⁵⁾
 - ‘디지털 위조물’이란, 소프트웨어, 기계학습, 인공지능 및 그 밖에 컴퓨터로 생성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식별 가능한 개인’(identifiable individuals)⁶⁾에 대한 ‘성적 이미지 표현물’(intimate visual depictions)⁷⁾을 의미한다.

- 컴퓨터로 생성되거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범위에는 실제 이미지 표현물을 각색, 수정, 조작, 변형하는 것도 포함된다.
 - 또한 ‘디지털 위조물’은 합리적인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식별 가능한 개인의 실제 이미지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게 보이는 이미지 표현물을 말한다.
- 동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연방 차원의 법적 구제방법이 충분하지 못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 학생이 소속된 학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범인·범죄 사실·증거를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해당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수단이 없었다.
 - 딥페이크 영상물이 게시된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할 법적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⁸⁾ 딥페이크 영상물의 즉각적 삭제가 피해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하였다.
 - 동법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사후적 규제체계를 확립하였고,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이에 따른 권리를 갖게 되었다.⁹⁾
 - **형사처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또는 악용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정 즉시 시행되었다.
 - **행정규제:** 플랫폼은 더 이상 게시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방관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신고·삭제 절차를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정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II.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1. 법률의 구성

- 동법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춘기 이후 여성의 유두, ② 성적 신체 분비물이 개인의 신체 일부 위에 드러나 보이거나 개인의 신체 일부 위로 이동하는 이미지, ③ 개인의 신체로부터 배출되는 성적 신체 분비물이 드러나 보이거나 이동하는 이미지, ④ 개인이 노골적인 성행위에 참여하는 이미지. 미국연방법전 제15편 제6851조의 (a)(5)(A)

8) ‘미국연방법전 제47편 제230조의 (c)’에 따라,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
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TAKE IT DOWN Act: A Federal Law Prohibiting the Nonconsensual Publication of Intimate Images”, 2025.5.20.

1)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creasing Threat of DeepFake Identities”, 2021.9.14.
2) Ballotpedia News, “Forty-seven states have enacted deepfake legislation since 2019”, 2025.7.22.
3) Public Law 119-12, 2025.5.19. 동법은 기존 「통신법(1934)」(Communications Act of 1934)을 일부 개정한 법률이다. 「통신법(1934)」은 ‘미국 연방법전 제47편 제151조 이하’에 편제되어 있는데, 동법 제정 후 제47편 제233조의 하위조항(h)와 제233a조가 각각 신설되었다.
4)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Take It Down Act’ Requires Online Platforms To Remove Unauthorized Intimate Images and Deepfakes When Notified”, 2025.6.10.
5)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아래 2개 법률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정의하고 있다:
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딥페이크영상 등”이라고 정의한다.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의1항에서 사이버폭력을 규정하는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라고 정의한다.
6) “식별 가능한 개인”이란, 성적 이미지 표현물 전부 또는 일부에 등장하고, 이러한 표현물과 관련하여 얼굴, 모습, 기타 구별되는 특징(고유한 모반, 기타 식별 가능한 특징 포함)이 표현되는 개인이라고 정의한다
7)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란, 다음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시각적 표현물을 의미한다: ① 개인의 노출된 생식기, 처부, 항문,

표 1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의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약칭)	TAKE IT DOWN Act로 약칭
제2조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authentic) 성적 이미지 표현물뿐 아니라 '허위' 디지털 위조물도 금지 대상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범죄구성요건 완화 및 벌칙 상향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등 합리적인 선의의 공개는 면책
제3조 (행정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은 삭제요청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 삭제 및 복제본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의무 · 플랫폼의 선의에 따른 접근 차단 또는 삭제는 면책 ·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를 단독 법집행기관으로 명시
제4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이란,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주로 활용하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의미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메일 등은 제외
제5조 (분리)	일부 규정 또는 그 개정사항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무효라도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

○ 동법의 핵심은 제2조와 제3조이다.

- 제2조는 모든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명시하여 고의적 게시행위를 처벌한다.
- 제3조는 플랫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피해자를 위한 신고·삭제 절차를 구축해야 하며, 피해자가 플랫폼에 삭제요청을 하면 플랫폼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2. 형사처벌

- **금지행위:** 제2조는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고의로 게시하기 위해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위협·강요·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협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금지대상:** 금지 대상물을 '실제' 성적 이미지 표현물과 '허위' 디지털 위조물로 구분하는데, 디지털 위조물도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로서 금지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 **피해자(성인 vs. 미성년자):**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¹⁰⁾인 경우를 구분하고, 각 경우에 대해 서로 다른 범죄구성요건 및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0) 동법에서 미성년자란 18세 미만의 개인을 의미한다.

표 2 피해자 나이에 따른 범죄구성요건 및 벌칙		
구분	성인 피해자	미성년자 피해자
범죄 구성 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행위자의 의도: 개인이 합리적 프라이버시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개인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획득·생성해야 함. ② 비자발성: 개인은 공격, 상업적 상황에서 표현된 내용을 자발적으로 노출하지 않아야 함. ③ 비공공성: 표현된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야 함. ④ 피해 의도 또는 실제 피해: 관련 표현물이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갖고 있거나, 개인에게 심리적·재정적·명예 훼손적 피해를 가해야 함.	아래 요건만 충족해도 됨. ①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는 다음 중 하나의 의도가 있어야 함. ·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히거나 수모를 주려는 의도,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려는 의도
벌칙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 예외: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집행기관, 연방 정보기관의 합법적 권한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보호·정보 활동
- '불법적 콘텐츠 또는 권유받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신고하기 위한 공개', '권유받지 않은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수취하여 지원·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공개' 등 합리적이고 선의에 따른 공개¹¹⁾
- 개인을 합당하게 도우려는 의도에 의한 공개
- 개인 자신의 나체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연루된 디지털 위조물을 소지·게시하는 사람
-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음란한 시각적 표현물'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성적 이미지 표현물 게시

○ **해석규정:** 제2조에 대한 해석규정(rules of construction)으로 아래 2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1) 그 밖에 법집행관 또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공개, 법적 절차와 연관되어 문서 제작·제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개, 의학 교육, 진단·치료의 일환으로 또는 합법적인 의학적·과학적·교육적 목적의 공개, 법적·직업적·기타 합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개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개인이 성적 이미지 표현물 생성에 동의했다고 하여,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다.
- 개인이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하여, 제2조 위반 혐의자가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다.

3. 행정규제

- **플랫폼:**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이란, ① 일반 대중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i) 메시지·비디오·이미지·게임·오디오 파일 등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위한 공간(forum)을 주로 제공하거나, (ii) 동의받지 않고 성적 이미지 표현물의 콘텐츠를 게시·구성·호스팅·제공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¹²⁾
- **플랫폼의 의무사항**
 - **신고·삭제요청 절차 구축:** 플랫폼은 특정 개인이 등장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플랫폼상에 게시된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신고 및 관련 콘텐츠 삭제를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2026년 5월 19일까지 구축해야 한다.
 - **게시:** 플랫폼은 신고·삭제 절차에 관한 공지를 플랫폼상에 게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플랫폼의 책임 관련 정보 및 신고·삭제 요청서 제출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삭제:** 플랫폼은 개인이 성적 이미지 표현물 삭제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러나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관련 콘텐츠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진 복제물을 확인·삭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면책:** 개인이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 불법적으로 공개되었다는 주장을 명백한 사실이나 상황에 근거하여 제기한 경우, 플랫폼은 관련 표현물을 선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삭제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관련 표현물이 궁극적으로 불법적으로 판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법집행기관:** 연방거래위원회를 단독 법집행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 플랫폼이 동법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따른 불공정·기만행위(unfair or deceptive act or practice)에 해당한다.¹³⁾

-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에 규정된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에 따라 법집행 수단을 활용하여 동법을 시행하고,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III. 결론

- 우리나라는 다음 3가지 법률에서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고,¹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 제22대 국회 출범 후, 우리 국회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수차례 개정하여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¹⁵⁾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자·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했다.¹⁶⁾
- 우리의 법률은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퇴치라는 동일한 입법 목적으로 동시대에 제정·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법률을 입법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은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연방법상 최초로 딥페이크를 의미하는 ‘디지털 위조물’을 정의하고 이를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특히 법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콘텐츠 또는 권유받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기

13) 미국연방법전 제15편 제45조, 연방규정집 제16편 제1장

14) 최근 우리 대법원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 …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5.8.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15) 법률 제20575호(2024.12.20. 일부개정), 법률 제20535호(2024.12.3. 일부개정), 법률 제20459호(2024.10.16. 일부개정), 법률 제20931호(2025.4.22. 일부개정), 법률 제20462호(2024.10.16., 일부개정)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불법합성 영상물(딥페이크)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양형위는 2025년 6월에 제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1기 양형위원회 2년 임기 동안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대상 범죄 총 8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양형위는 2027년 4월 26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할 계획이다.

16) 법률 제20534호(2024.12.3. 일부개정)

12) 다만, 플랫폼의 범위에서 다음은 제외한다: ①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 ② 전자우편, ③ (i) 사용자가 생성하지 않고 미리 선택한 콘텐츠 위주로 구성되고, (ii) 모든 채팅·댓글·대화 기능이 미리 선택한 콘텐츠 제공에 부수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의존하는 온라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위한 공개’, ‘권유받지 않은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수취하여 지원·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공개’ 등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이번 법률은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즉,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가 일차적으로 관련 콘텐츠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이 삭제요청을 받은 후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는 시한을 48시간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 불법적으로 공개 되었다는 주장을 명백한 사실이나 상황에 근거하여 제기한 경우’ 플랫폼은 선의로 관련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를 삭제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외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사례

◇ 주민참여 관련 입법사례 ◇

1

[미국 뉴욕]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 조례 (뉴욕시 헌장 제76장)

- New York City Charter, Chapter 76 : Civic Engagement Commission

◇ 번역문

뉴욕시 헌장 제76장 시민참여위원회

제3200절 시민참여위원회

뉴욕시에 시민참여위원회를 둔다. 시민참여위원회의 목적은 시민 신뢰를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으며, 위원회의 자체적인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시민 봉사, 자원 봉사, 공공공간의 관리, 시민교육, 참여예산, 커뮤니티 보드 참여,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참여 등 시민활동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 그 밖의 관련 활동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위원회는 뉴욕 시민이 시민 생활에 의미 있게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

제3201절 위원회의 구성

a.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8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이 중 1인은 시장이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위원장은 시장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한다. 또한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최소 1인은 해당 위원이 재직하는 임기 개시일 30일 전을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 가입한 자여야 하고, 또 다른 최소 1인은 해당 위원이 재직하는 임기 개시일 30일 전을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유권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정당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시의회 의장은 2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각 자치구 구청장은 각각 1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 임명 시 시장, 시의회 의장 및 각 자치구 구청장은 이민자,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 장애인, 학생, 청소년, 노인, 재향군인, 지역사회 단체, 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거나 시민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옹호 단체를 비롯해 시 정부와 그 절차에서 역사적으로 대표성이 부족했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 집단을 대표하거나 이들과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고려하여야 한다.

b. 위원장 외의 최초 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3명은 임기 2년

2.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4명은 임기 4년. 이러한 위원에는 해당 위원이 재직하는 임기 개시일 30일 전을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 가입한 위원 1명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유권자 수를 보유한 정당에 가입한 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1명은 임기 2년
4.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1명은 임기 4년
5. 각 자치구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은 각각 임기 3년

최초 임기는 2019년 4월 1일에 개시한다. 이후 위원장 외의 각 위원은 최초의 임명 방식에 따라 시장, 시의회 의장, 자치구 구청장 중 1인이 임기 4년으로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임명권자가 해당 임기 만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해당 위원은 추가로 임기 4년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된 위원의 최초 임명 방식에 따라 잔여 임기 동안 재직할 위원을 임명한다. 각 위원은 뉴욕시 거주자여야 한다. 어느 위원도 정당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으며,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관, 자치구 구청장, 시의회 의원직위의 선거에서 후보자 지명을 받기 위한 후보자 또는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위원장 직위를 제외하고, 다른 공직, 고용, 신탁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원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며, 위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공직, 고용, 신탁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할 권리를 제한받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 c. 위원장은 집행이사를 겸한다. 위원장 겸 집행이사는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을 총괄하며,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공무원 및 직원을 고용하고 배치하고 그 직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장 겸 집행이사는 전임으로 근무하며 해당 직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d. 그 밖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받는다. 또한 시 소속 직원은 시에서의 근무에 대한 정규 보수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 e. 재직 중인 위원 정수의 과반수는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족수가 된다.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202절 위원회의 관할, 권한, 직무

a. 위원회는 예산 배정에 따라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전(全) 시 차원의 참여예산. 제225절 제a관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되, 주민이 지역 사업에 관한 제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호를 표명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집행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참여를 촉진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 (a) 뉴욕시 전역에서 공공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 (b)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자치구 구청장, 커뮤니티 보드, 그 밖의 시 기관, 선출직 공직자와

협력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을 조정한다.

- (c) 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자문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권고를 받는다. 이러한 권고에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모범사례,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도구의 활용, 인구통계 정보의 보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자문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회는 시 사업의 기획 및 관리 또는 참여예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 또는 이민자 공동체,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 장애인, 청소년, 학생, 노인, 재향군인, 지역사회 단체, 시 정부와 그 절차에서 역사적으로 대표성이 부족했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 집단을 대표하거나 이들과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참여예산 자문위원회의 모든 행위 또는 권고는 전문적 성격에 한하며, 위원회 또는 다른 시 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d) 공청회, 온라인 도구, 그 밖의 지역사회 참여 방식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다양한 공공 참여 방법을 마련한다.
 - (e) 뉴욕시 거주자로서 16세 이상인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16세보다 낮은 최소 연령 요건을 정하거나 필요한 제한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f) 이민자 담당 시장실, 장애인 담당 시장실,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국, 고령자 담당국, 재향군인 서비스국과 협의하여 직원 교육, 지역사회 홍보, 언어 지원 도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조치를 식별하고 이행함으로써 비시민권자, 이민자 공동체 구성원, 이 절 및 위원회 규칙에 따라 참여 자격이 있는 18세 미만의 주민, 학생, 노인, 재향군인, 장애인,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2. 지역사회 파트너십.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 기관, 시민 지도자의 시민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이러한 사업에는 지도력 역량 개발, 공공공간 관리, 청소년 및 학생 참여, 시민교육, 노인·재향군인·이민자 공동체, 시 정부와 그 절차에서 역사적으로 대표성이 부족했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 집단, 시 전역의 지역사회와 이웃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언어 접근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행함에 있어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의 언어 접근성 필요를 고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되, 행정법 제 23-1102절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한다. 이 관 제4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행정법 제23-1101조에 따른 적용 대상 기관으로 본다.
 4. 투표소 언어 지원 프로그램.
 - (a) 위원회는 예산 배정에 따라 이민자 담당 시장실 및 시 도시계획국과 협의한 후, 뉴욕시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 전역의 투표소에 통역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설치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과 관련하여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협력한다.
 - (b)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설치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권고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언어 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자문위원회는 시가 지정한 전 시 차원의 각 언어에 능통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언어 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또는 시 내에서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언어 지원 자문위원회의 모든 행위 또는 권고는 자문적 성격에 한하며, 위원회 또는 다른 시 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c) 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까지, 다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투표소와 언어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된 단일한 또는 복수의 방법론을 개발하여 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i. 위원회는 행정법 제23-1101조에서 정의한 전 시 차원의 지정 언어를 사용하는 제한적 영어 사용 인구가 유의미하게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투표소를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가능한 경우 다음 정보를 고려한다. 다만, 검토 결과 특정 정보 범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주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다.

- A. 미국 인구조사국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미국 지역사회조사 자료
- B. 투표소의 위치 및 선거구 경계
- C. 유권자 투표율 관련 정보
- D.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정보(등록 유권자의 성씨 분석 결과 포함)

ii. 이 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투표권법에 따라 특정 관할 구역에서 적용 대상 언어로 지정된 언어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 이미 적용 대상 언어로 결정된 경우 통역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iii. 이 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를 표명한 투표소에서는 위원회가 통역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iv. 위원회는 행정법 제23-1101조에서 정의한 시 전역 차원의 지정 언어가 아닌 언어에 대해서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언어로 통역사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A) 시 도시계획국 및 언어서비스 조정관실이 판단한 미국 인구조사 자료에 근거할 때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제한적 영어 사용 인구 수가 가장 낮은 순위의 전 시 차원 지정 언어를 사용하는 영어 사용 제한 인구 수를 초과하고, (B) 최소 1개의 투표소에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영어 사용 제한 인구가 유의미하게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d) 2020년 4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 항 제(c)호에 따라 제안된 방법론에 대하여 최소 30일 동안 공공 의견을 접수하고, 해당 방법론에 관한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투표소와 언어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방법론을 공표하여야 한다.

(e) 예산 배정에 따라 위원회는 2020년에 실시되는 총선거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f) 2022년 9월 1일까지 및 그 이후 최소 5년마다 위원회는 이 항 제(d)호에 따라 수립된 최종 방법론과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투표소 및 언어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민자 담당 시장실 및 시 도시계획국과 협의한 후, 새로 이용 가능한 미국 인구조사 자료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를 고려하여, 이 항 제(c)호 i목부터 iv목까지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해당 방법론과 투표소 및 언어를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전 선거에서 각 적용 대상 투표소에서 이 항에 따라 제공된 통역 서비스가 이용된 정도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방법론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투표소 및 언어에 대한 모든 갱신 사항을 위원회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g) 위원회는 이민자 담당 시장실과 협의하여 이 항에 따라 통역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최소 기준 및 교육 요건을 정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해당 규칙에는 최소한 해당 개인이 선거운동 금지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모든 적법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h)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각 선거에서 제공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언어 및 투표소를 대중(公衆)에게 통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하여야 한다.

(i) 위원회는 프로그램에 관한 대중의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j) 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이 이 항에 따라 수행하는 통역 서비스는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 또는 책임을 대체하거나 이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k) 이 항 또는 그 운영이나 적용은 어떠한 사람 또는 단체도 시 또는 그에 속한 기관, 공직자, 직원에 대하여 사적 소송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5. 시 기관과의 협력. 위원회는 다른 시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시 서비스 및 공공 참여 절차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 기관이 시민참여 사업을 개발 및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마련하며, 시 내 시민참여 기회에 관한 공공 정보를 한곳에 모아 모든 시 거주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시 정부와 그 절차에서 역사적으로 대표성이 부족했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도 포함된다.

b. 보고. 위원회는 2021년 9월 30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전 회계연도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225절 제a관 및 이 절 제a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 시 차원의 참여예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를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인구통계 정보를 집계 및 익명화된 형태로 보고
- (b) 권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수를 자치구별로 구분한 자료
- (c)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된 공공 홍보 도구에 대한 설명
- (d) 참여 확대 또는 프로그램의 다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
- (e) 위원회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정보

2. 이 절 제a관 제4항에 따라 통역사를 제공한 투표소의 위치, 제공한 언어, 해당 언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수를 투표소별로 구분한 자료와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유권자의 수요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권고 사항

3. 위원회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정보

c.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권자 지원 자문위원회, 선거자금위원회,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이나 권력을 제한하거나, 해당 기관이 제정하거나 집행하는 관련 법률 또는 규칙의 집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d. 추가 권한 및 직무. 다른 법률의 상충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장 제3200절 또는 이 장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한 시민참여위원회의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시장 집행실, 그 밖의 시장 소속 사무소 또는 시장이 장을 임명하는 부서가 수행하는 권한과 직무를 행정명령으로 시민참여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언제든지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203절 커뮤니티 보드 지원

- a. 예산 배정에 따라 시민참여위원회는 시 도시계획국 및 그 밖의 관련 시 기관을 비롯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자치구 구청장과 협의하고 조정하여 커뮤니티 보드에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제공하는 해당 토지이용 제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도시계획 또는 토지이용 관련 기타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적격 업체, 전문 인력 또는 컨설턴트를 발굴하고, 커뮤니티 보드가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을 수행한다. 이용 가능한 자원을 모든 커뮤니티 보드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고, 해당 자원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커뮤니티 보드가 필요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지시하고 해당 자원이 그러한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이 항에 따라 제공된 자원에 관하여 커뮤니티 보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2.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민국 담당 시장실과 협의하여,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가 요청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한다. 여기에는 직원 교육, 지역사회 홍보, 언어 지원 도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3. 커뮤니티 보드를 위한 교육과 그 밖의 지원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여기에는 기술 도구 활용 지원 및 통일된 회의 절차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b. 보고. 위원회는 연차보고서에 이 절에 따라 커뮤니티 보드에 제공한 자원의 범주에 관한 설명, 각 자원 범주를 이용한 커뮤니티 보드 수를 자치구별로 구분한 자료, 커뮤니티 보드의 수요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04절 시장 산하 기관의 협력

시장 산하 기관의 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뉴욕시의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의 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위원회와 협력하여야 하며, 이 장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참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번역문

**마쿠에니 카운티
주민참여 거버넌스 조례(2014)
법안**

마쿠에니 카운티 의회가 헌법 부칙 4 제2편 제14항을 이행하고, 카운티 거버넌스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절차 및 플랫폼을 설치하며,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마쿠에니 카운티 의회는 다음과 같이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

제1부 총칙

1. 이 조례안은 「마쿠에니 카운티 주민참여 거버넌스 조례(2014)」라 한다. 약칭
2. 이 조례안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각 약칭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설
 - "헌법"이란 2010년에 개정된 「케냐 헌법」을 말한다.
 - "카운티"란 마쿠에니 카운티를 말한다.
 - "집행위원회"란 헌법 제179조에 따라 설치된 카운티 집행위원회를 말한다.
 - "카운티 서기"란 2012년에 제정된 「카운티 정부법」 제44절에 따라 임명된 카운티 서기를 말한다.
 - "카운티 관보"란 카운티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되는 관보 또는 그 관보의 부록을 말한다.
 - "정부"란 마쿠에니 카운티 정부를 말한다.
 - "카운티 공직자"란 유급 또는 무급,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카운티 정부의 임명을 받아 카운티 공직을 보유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되,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보수를 받는 카운티 공공기관의 시간제 종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성과지표"란 사무국의 프로그램 또는 사업과 관련된 활동, 절차, 전략의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 "사무국"이란 제5절에 따라 설치되는 카운티의 주민참여 사무국을 말한다.
 - "공중"이란 이 조례안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a) 카운티의 거주자
 - (b) 특정 도시지역의 납세자

<p>(c) 카운티 거버넌스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거주 시민단체 또는 정부기관, 민간부문 또는 단체</p> <p>(d) 카운티 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카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비거주자</p> <p>3. 이 조례안의 목적 및 취지는 헌법 제1조 제4항, 제10조, 제201조, 제232조 제1항 제 (e)호에 따라 다음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p> <p>(a) 헌법 부칙 4 제2편 제14항</p> <p>(b) 헌법 제174조 제(c)호 및 제(d)호에 규정된 분권의 목적 및 원칙</p> <p>(c) 2012년에 제정된 「카운티 정부법」 제8편</p> <p>4. 2012년에 제정된 「카운티 정부법」 제87절에 따라 카운티 정부 활동에서 주민참여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p> <p>(a)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 단체, 주민은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것</p> <p>(b) 결정을 내릴 때 주민의 의견을 고려할 것</p> <p>(c) 의사결정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전달하여 지속 가능한 결정을 촉진할 것</p> <p>(d)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체, 단체, 주민의 참여를 촉진할 것</p> <p>(e) 참여자가 참여 방식 설계에 참여하도록 의무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것</p> <p>(f) 참여자가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할 것</p> <p>(g) 참여자의 의견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참여자에게 알릴 것</p> <p>(h)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가적 가치 및 거버넌스 원칙을 준수할 것</p> <p>(i) 헌법 제232조에 규정된 공공서비스의 가치 및 원칙을 준수할 것</p> <p>(j) 헌법 제6장에 규정된 지도력 및 청렴성 원칙을 준수할 것</p> <p>(k) 「카운티 정부법(2012)」 제87절에 규정된 주민참여 원칙을 준수할 것</p>	<p>조례안의 목적 및 취지</p> <p>2012년 제17호 기본 원칙</p> <p>2012년 제17호</p>
<p>제2부 카운티 주민참여 사무국의 설치, 구성, 기능</p>	
<p>5. 카운티 정부의 공공기관으로서 마쿠에니 카운티 주민참여 사무국을 설치한다.</p> <p>6. (1) 사무국은 다음으로 구성한다.</p> <p>(a) 카운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하는 의장 1명</p> <p>(b) 카운티 공공서비스위원회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하고 카운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 2명</p> <p>(c) 당연직 위원인 서기</p> <p>(2) 주지사나 카운티 의회는 사무국의 의장 및 위원을 임명할 때 다음을 보장한다.</p> <p>(a) 사무국의 구성은 카운티 내 주민의 지역적 및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할 것</p>	<p>사무국 설치 사무국 구성</p>

<p>(b) 위원 중 동일 성별의 비율은 3분의 2를 초과하지 말 것</p> <p>7. (1) 사무국 의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지명은 다음 내용에 따른다.</p> <p>(a) 공개경쟁 방식으로 투명하게 실시할 것</p> <p>(b) 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p> <p>(c) 공공서비스에 관한 헌법상 요건에 부합하게 실시할 것</p> <p>(2) 사무국 의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a) 케냐 국민일 것</p> <p>(b) 인가된 대학교의 학위를 보유할 것</p> <p>(c) 지역사회 봉사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식과 관련 경험을 갖출 것</p> <p>(d) 헌법 제6장에 규정된 지도력 및 청렴성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p> <p>(a) 심신미약자</p> <p>(b) 파산 면책을 받지 못한 자</p> <p>(c) 헌법 또는 그 밖의 성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에서 해임된 자</p> <p>8. (1) 사무국은 헌법 부칙 4 제2편 제14항에 따라 카운티 거버넌스에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조정한다. 이때 카운티 내 분권 단위에서 공중을 구성하는 공동체, 단체, 주민의 참여를 포함한다.</p> <p>(2)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기능 및 의무를 수행할 때 카운티 주민참여 활동의 효과적인 조정을 촉진하고 감독하며, 다음을 수행한다.</p> <p>(a) 「카운티 정부법」 제91절에 따라 요구되는 주민참여를 위한 구조를 수립할 것</p> <p>(b) 주민참여 활동이 공중의 범위를 폭넓게 포괄하고, 전통적 부문 이해관계자에 국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p> <p>(c) 주민참여를 실시하는 맥락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공중에게 명확히 제공할 것</p> <p>(d) 다른 정책 추진, 쟁점, 주민참여 활동과의 기존 또는 잠재적 연계에 관하여 공중에게 알릴 것</p> <p>(e) 계획된 주민참여의 성격과 범위에 비추어 재정자원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중에게 알릴 것</p> <p>(f) 계획된 주민참여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히 교육받은 인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p> <p>(g) 공중의 의견 제출 및 논평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을 참여자에게 알리도록 보장할 것</p> <p>(h) 사용되는 주민참여 수단이 정책 추진의 성격, 관련 쟁점, 영향을 받는 대상 집단, 가용 인력 및 자원에 비추어 적절하도록 보장할 것</p> <p>(i) 공중에게 환류 절차를 마련할 것. 여기에는 결정에 관하여 공중이 추가 논평 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포함된다.</p> <p>(j) 주민참여 계획을 위한 평가 체계를 개발할 것</p>	<p>의장 및 위원의 임명과 자격</p> <p>사무국의 기능</p>
--	---------------------------------------

- (k) 주민참여 절차의 결과와 공중의 의견이 결정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공중, 영향을 받는 집단,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도록 보장할 것
 - (l) 주민참여 절차가 공중, 공직자, 다양한 참여자의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 규정, 정책,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
 - (m) 새로운 주민참여 기법 및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n) 카운티 의회에 물류 지원 및 전략을 제공할 것. 여기에는 협의 계획의 수립과, 의회에 회부된 모든 사안에서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 (o) 든 활동에 관한 최신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을 유지할 것
 - (p) 주민참여의 문화와 원칙에 대한 존중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와 관련된 공중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촉진할 것
 - (q)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연구할 것
 - (r) 이 조례안에 따른 기능 및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반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카운티 의회에 제출할 것
 - (s) 법령에 따라 수반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할 것
- (3) 사무국은 이 조에 따른 기능 및 의무를 수행할 때 이 조례안 부칙 1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다.
9. (1) 사무국은 이 조례안에 따른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조치를 하거나, 공공기관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무국의 권한
- (2) 제(1)항의 일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무국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주민참여와 관련된 정책 사항에 관하여 카운티 집행위원회에 자문할 권한
 - (b) 사무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협회, 전문 단체와 협약 또는 약정을 체결할 권한
 - (c) 주민참여에 관한 정해진 기준을 집행할 권한
 - (d) 사무국의 설치 목적을 가장 잘 촉진하는 방식으로 사무국의 자산을 관리, 감독, 보호, 운영할 권한
- (e) 사무국의 권한 중 일부를 사무국의 공직자, 직원, 대리인, 부서, 위원회에 위임할 권한
- (f) 이 조례안에 따른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권한
10. 사무국 의장 및 위원은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부칙 3에 규정된 직무 선언 또는 약속을 하고, 이에 서명한다. 직무 선언 또는 약속
11. (1) 사무국은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 위원회
-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사무국 구성원과 공동위원(사무국이 정하는 바에 따름)으로 위촉되는 자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공동위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 (3) 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사무국이 확정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12. (1) 의장은 3년의 임기로 임명하며, 1회에 한하여 다시 임명할 수 있다. 임기
- (2) 사무국 위원은 3년의 단일 임기로 임명하며, 1회에 한하여 다시 임명할 수 있다.

- (3)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사무국 의장 및 위원은 전임으로 근무한다.
13. (1) 당연직 구성원을 제외한 사무국 의장 및 위원에게는 급여 및 보수위원회의 보수를 받아 카운티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및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
- (2) 사무국의 당연직 구성원에게는 급여 및 보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카운티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급부를 지급한다.
1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국 구성원 지위를 상실한다. 직위 상실
- (a) 카운티 공공서비스위원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b)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 (c) 파산자로 선고된 경우
 - (d)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e) 사망한 경우
15.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사무국 구성원에 결원이 생기면 카운티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이 조례안의 규정에 따라 새 구성원을 임명한다. 결원 보충
16. (1) 사무국에 서기를 두며, 카운티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서기를 모집한다. 사무국 서기
- (2) 사무국 서기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a) 케냐 국민일 것
 - (b) 케냐에서 인가된 대학교의 학위를 보유할 것
 - (c) 관리직에서 5년 이상의 입증된 경력을 갖출 것
 - (d) 공공행정 및/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폭넓은 경력을 갖출 것
 - (e) 헌법 제6장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서기는 사무국의 최고집행책임자이며 사무처장으로서 사무국에 책임을 진다.
- (4) 서기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의 임기로 다시 임명할 수 있다.
17. (1) 카운티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근무 조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기 해임 서기 해임
- (a)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사무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b) 파산 또는 지급불능으로 선고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된 경우
 - (c)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 (d) 카운티 공공서비스위원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e) 정당한 사유 없이 1개 회계연도 내에 이사회 또는 위원회 회의에 연속하여 3회 결석한 경우
- (f) 관련 전문기구가 직업상 비위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경우
- (g) 헌법에 따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경우
- (h) 사무국이 심의 중이거나 심의할 예정인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i) 중대한 비행 또는 중대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경우
- (2) 카운티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기를 해임하기 전에 서기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 (a) 서기에게 제기된 협의에 관한 충분한 통지
 - (b) 서기가 해당 협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
18. (1) 사무국의 업무 및 사무는 부칙 2에 따라 처리한다. 회의
- (2) 부칙 3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은 국가공기업 이사회 회의 및 의사진행(議事進行)을 규율하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서 자체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3) 사무국은 회의에 누구든 초청하여 출석하게 하고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초청받은 자는 사무국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9. 사무국 구성원 또는 사무국의 공직자, 직원, 대리인이 사무국의 기능, 권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의로 행한 행위는 그 구성원, 공직자, 직원, 대리인에게 어떠한 소송, 청구,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지 아니한다. 개인 책임 면책

제3부 주민참여 포럼

20. (1) 카운티 집행위원회, 카운티 정부 기관, 상원 의원 또는 그 밖의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주민참여 포럼의 소집을 지원한다. 또한 사무국은 공중 또는 카운티 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중요 사안이나 카운티 정부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주민참여 포럼을 소집한다. 주민참여 포럼
- (2) 사무국은 포럼을 소집할 때 충분한 홍보를 통해 성별을 불문하고 소외된 집단 및 공동체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출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3) 사무국은 각 포럼마다 서기를 지정하여 포럼의 의사진행을 기록하게 하고, 그 회의록을 카운티 전역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유한다.
 - (a) 포럼에서 제기된 사안을 관련 카운티 정부 기관(들)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조치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할 것
 - (b)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환류를 제공할 것
 - (4)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포럼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지원한다.
 - (a) 포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b) 장애인을 포함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것
 - (5) 누군가를 해당 카운티 의회의 의원, 국회의원, 상원의원 또는 다른 카운티의 의원으로 선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
 - (6)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회의 개최와 관련된 다른 성문법의 규정을 약화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7) 카운티 의회는 카운티 의회에 회부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카운티 내에 다른 포럼을 구성할 수 있다.
 - (8) 예산 또는 제안된 법령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은 각 서브카운티(Sub-county)에

- (9) 서 적어도 1회 이상 개최한다.
21. (1) 서브카운티 또는 도시지역의 관리인이나 카운티 의회 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주민참여 포럼의 소집을 지원한다. 서브카운티 및 도시지역 주민 참여 포럼
- (a) 서브카운티, 도시지역, 워드의 관심 사안
 - (b) 서브카운티 또는 도시지역에서 카운티 정책 및 계획의 이행
 - (c) 서브카운티 또는 도시지역의 행정 및 운영
 - (d) 서브카운티, 도시지역, 워드에서 카운티 공공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 (2) 이 조에 따라 소집되는 포럼에는 제22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2. (1) 워드 또는 마을의 행정관리인이나 카운티 의회 의원은 워드 또는 마을 주민참여 포럼을 소집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의 운영을 지원한다. 워드 또는 마을 주민참여 포럼
- (a) 해당 워드 또는 마을의 관심 사안
 - (b) 워드 또는 마을에서 카운티 또는 서브카운티의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이행
 - (c) 워드 또는 마을의 행정 및 운영
 - (d) 워드 또는 마을에서 카운티 공공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 (2) 포럼은 참석을 희망하는 워드 또는 마을의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며, 주민은 대표자를 통해 또는 직접 발언할 수 있다.
- (3) 포럼 소집자는 서기를 지정하여 포럼의 의사진행을 기록하게 하고,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회의록을 워드 또는 마을 전역에 공표하며, 다음을 수행한다.
- (a) 포럼에서 제기된 사안을 관련 카운티 정부 기관이 조치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할 것
 - (b)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환류를 제공할 것
- (4) 포럼 소집자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소외된 집단 및 공동체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출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3. 사무국은 카운티 정부와 그 산하기관이 소수자 및 소외된 집단을 위하여 적극적 우대조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음 사항이 보장되도록 한다. 적극적 우대조치 프로그램
- (a)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참여하고, 이러한 사항이 거버넌스 그 밖의 생활 영역에서 대표되도록 할 것
 - (b) 경제, 교육, 사회, 종교, 정치 분야 전반에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
 - (c) 고용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
 - (d) 민족적 및 문화적 가치, 언어, 관행을 발전시킬 것
 - (e) 물, 보건 서비스, 기반시설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f) 개인적 발전을 추구하도록 할 것

- (g) 존엄과 존중 속에서 살며, 학대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
- (h) 언어, 종교, 문화,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성, 카스트, 출생, 혈통 또는 그 밖의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차별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
- (i) 민족, 문화, 언어, 종교 또는 그 밖의 정체성을 이유로 한 적대, 폭력, 학대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

제4부 재정 규정

24. 사무국의 기금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의 기금
- (a) 카운티 의회가 제공하는 자금
 - (b) 이 조례안에 따른 권한 행사 및 기능 수행 과정에서 사무국에 귀속되거나 사무국에 권리가 발생하는 자금 또는 자산
 - (c) 그 밖의 모든 재원을 통해 제공되거나 사무국에 기부 또는 대여되는 모든 자금
- (2) 이 조례안에 따른 권한 행사 및 기능 수행 과정에서 사무국이 지출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금액은 사무국의 기금에서 지급한다.
25. 사무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12개월의 기간으로 한다. 회계연도
26. (1) 사무국은 각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해당 연도의 사무국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추계를 작성하게 한다. 연간 예산추계
- (2) 연간 예산추계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사무국의 모든 지출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사무국 직원 및 구성원에 대한 급여, 수당, 퇴직공로금을 비롯한 그 밖의 비용의 지급
 - (b) 사무국 건물 및 부지의 유지관리
 - (c) 사무국 활동의 교육, 연구, 개발에 대한 자원 지원
 - (d) 주민참여 회의의 일정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자원 지원
 - (e) 급부, 보험, 건물·설비·장비의 교체와 관련하여 장래에 예상되거나 우발적인 채무를 충당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사무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항
- (3) 연간 예산추계는 해당하는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카운티 서기가 카운티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를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한다.
- (4)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연간 예산추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사무국의 목적을 위한 어떠한 지출도 할 수 없다.
27. (1) 사무국은 사무국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에 관한 적절한 회계장부 및 회 계기록을 보관하게 한다. 회계 및 감사
- (2) 사무국은 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관한 사무국의 회계를 다음 자료와 함께 카운티 감사원장에게 제출한다.

- (a) 해당 연도 동안의 사무국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b) 해당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 사무국 자산 및 부채 명세서
- (3) 사무국의 연간 회계는 공공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감사, 보고한다.
28. 사무국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한다. 은행계좌

제5부 기타 규정

29. (1) 사무국은 각 회계연도 말에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연간 보고서
- (2) 사무국은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간 보고서를 주지사과 카운티 의 회에 제출한다.
- (3) 연간 보고서에는 해당하는 연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사무국의 재무제표
 - (b) 주민참여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설명
 - (c) 사무국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정보
- (4) 사무국은 연간 보고서를 카운티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1종 이상의 신문에 게재하며, 사무국이 정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공표한다. 정보 관리
30. (1) 사무국은 권한 범위 내에서 카운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게재하고 공표한다.
- (2) 누구든지 공익을 위하여 사무국의 권한 범위 내의 정보에 대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은 다음 내용에 따른다.
- (a) 해당 요청은 서기 또는 사무국이 이를 위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제출할 것
 - (b) 사무국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수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을 것
 - (c) 사무국의 비밀유지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
- (4) 사무국은 헌법 제35조와 정보공개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a) 해당 요청이 사정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경우
 - (b) 신청인이 사무국이 부과한 비밀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5) 헌법 제35조에 따른 정보 접근권은 이 조에서 정하는 범위와 정도로 제한한다.
- (6) 사무국의 모든 구성원 및 직원은 비밀유지 계약에 서명한다.
31. 「카운티 정부법(2012)」 제91절에 따라 사무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공고를 게재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공표
2012년 제17호
- (a) 사무국의 모든 사무소 소재지
 - (b) 사무국의 주소, 전화번호, 사무국과의 연락 또는 접촉을 위한 그 밖의 수단
3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 판결 시 50만 실링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그 두 가지를 모두 병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 및 처벌

- (a) 정당한 사유 또는 적법한 이유 없이 이 조례안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구성원 또는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위협한 경우
- (b)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한 경우
- (c) 사무국이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무국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d) 이 조례안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구성원 또는 직원을 기만하거나 고의로 오도한 경우

- 33. 이 조례안에 따라 사무국이 내린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카운티 공공 서비스위원회에 해당 결정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 34.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회 위원은 사무국과 협의하여 이 조례안의 규정을 더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

**부칙 1(제8조)
주민참여 지침**

다음 지침은 카운티 정부와 사무국이 주민참여 활동을 수행할 때 따른다.

1. 협의 절차의 각 단계마다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협의를 위한 현실적인 일정표를 수립한다.
2. 협의 대상이 되는 공중, 공동체, 전문집단의 유형, 협의 사항/쟁점, 구체적 목적을 명확히 한다.
3. 협의 문서는 가능한 한 단순하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협의 사항/쟁점의 요약을 제공하며, 다루어야 할 질문을 명확히 제시한다.
4. 문서를 최대한 널리 게재하고 배포한다. 이때 인쇄본, 웹사이트, 지역 공동체 라디오 공지, 지역 정보센터, 전통 매체(게시판 포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5. 모든 의견을 신중하고 열린 태도로 분석하고, 표명된 의견과 내린 결정의 이유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중에게 널리 공개한다.
6. 공중이 결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7. 이해관계자가 주민참여 절차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8. 의사결정권자가 한 약속을 포함하여 공중에게 한 모든 약속은 선의로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9. 모든 참여자 사이에서 절차에 대한 신뢰와 신빙성을 높이는 조치를 수행하고 이를 장려한다.
10. 해당 기관 또는 그 지휘 아래 수집된 모든 자료, 수행된 분석,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11. 수행된 업무 또는 관련 기관의 지휘 아래 수행된 업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이 없도록 보장한다.
12. 고객, 공직자, 공중, 동료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충돌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관계 또는 행위를 점검한다.
13. 부정직, 사기, 기망, 허위 진술, 차별을 수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4. 고객이 원하는 결과가 전문적 판단과 충돌하는 경우, 그 결과 달성 여부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수료를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제19조)
사무국의 회의 및 절차**

1. 카운티 서기가 사무국의 첫 회의를 소집한다.
2. 사무국이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며,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3. 사무국은 매 회계연도에 6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와 다음 회의 사이의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구성원 4분의 3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구성원에게 회의 개최일 최소 7일 전에 서면으로 회의 통지를 해야 한다.
5.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부재하면 부의장이 주재한다.
6. 사무국 구성원은 다음 경우에 구성원 중에서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 (a) 사무국의 첫 회기
 - (b) 부의장 직위에 결원이 생겨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의장과 부의장은 동일한 성별일 수 없다.
8. 어떤 개인이 사무국에 상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 또는 수탁자 책임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고, 그 사항이 심의 대상인 사무국 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 해당인은 회의 개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해당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그 사항의 심의 또는 토의에 참여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의견권을 행사할 수 없다.
9. 제8조에 따른 이해관계 신고는 신고가 이루어진 회의의 회의록에 기록한다.
10.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 판결 시 100만 실링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그 두 가지를 모두 병과할 수 있다.
11. 사무국의 어떤 구성원 또는 직원도 사무국과 거래나 영업을 할 수 없다.
12. (1) 제13조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정족수는 임명된 구성원의 과반수 미만일 수 없다.
13. 사무국에 결원이 있는 경우, 회의의 정족수는 임명된 구성원 3명 미만일 수 없다.
14.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중 최소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5. 사무국은 회의의 의사진행과 내려진 결정을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유권해석 동향

1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노동단체의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25-0426 / 요청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 회신일자 2026. 1. 7.]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연번	질의기관	질의내용	회신일	페이지
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노동단체의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등 관련)	'26. 1. 7.	48
2	경기도 연천군	군수가 부유물의 살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5. 12. 22.	51
3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외에 백일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25. 12. 19.	54
4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해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동의 대상에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25. 12. 19.	60
5	전라남도 교육청	학교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투표기간과 같은 공휴일이 아닌 투표일의 경우에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학생에게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출결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직선거법」 제6조제1항 관련)	25. 12. 19.	63

◇ 질의요지

-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노동단체의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9. 9. 의견제시 25-0251 참조. 법제처 2022. 7. 28. 회신 22-0423 해석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사관계발전법”이라 함) 제2조는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함)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으로, 노동단체에 대한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6. 16. 회신 16-0191 해석례 참조).

그리고,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협의회가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아닌 노동단체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단체의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가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생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군수가 부유물의 살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안건번호 : 의견25-0430 / 요청기관: 경기도 연천군 / 회신일자 2025. 12. 22.]

◇ 질의요지

- 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에서의 부유물의 살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질의 가가 가능하다면) 군수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하 “연천군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려는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물질의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무가 연천군 소관 자치사무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제1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살펴보면,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는 국가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천군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이유도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통해 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는 연천군 소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천군조례안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려는 부유물에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단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노력의무라고 하더라도 이전 헌법 재판소 결정례(각주: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 참조)의 취지와 배치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 교육·홍보하는 사무가 연천군 소관 자치사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접경지역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무는 연천군 소관 자치사무로 보이는데, 이 사안의 교육·홍보 사무는 그러한 접경지역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무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로서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에 관한 본연의 사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의요지와 같은 교육·홍보 사무는 주민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법제처 2025. 5. 15. 의견제시 25-0181, 법제처 2025. 5. 9. 의견제시 25-0112, 법제처 2024. 10. 28. 의견제시 24-0358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단순위헌, 2020헌마1724, 2023.9.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3 성남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 외에 백일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25-0416 / 요청기관: 경기도 성남시 / 회신일자 2025. 12. 19.]

◇ 질의요지

- 성남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외에 백일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남시장은 예방접종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조례에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백일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 접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는 A형간염(자목)과 백일해(차목)를 제2급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인플루엔자(가목)를 제4급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백일해(제3호), 인플루엔자(제14호), A형간염(제15호)을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4조제2호에서는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드는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제32조제3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제1호에서 백일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을 국가예방접종 적용대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를 별표 1에 규정하여 백일해 및 A형간염 접종대상은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㉓ 및 ㉔)로,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13세 영유아 및 어린이, 임신부(㉕)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이 감염병예방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4조제2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위 별표 1에서 정한 접종대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 접종대상 외에 백일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3. 15. 의견제시 22-0075 참조).

아울러, 대상포진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질병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64조제2호가 성남시장이 시행하고자 하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20. 4. 14. 의견제시 20-0060 참조).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바목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인 등에게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예방 접종대상 외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A형간염, 백일해,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라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③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 아. (생략)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百日咳)
 - 카. ~ 서. (생략)
4. (생략)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인플루엔자
 - 나. ~ 저. (생략)
6. ~ 21.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 17. (생 략)
- ③ ~ ④ (생 략)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 ③ (생 략)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생 략)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 (생 략)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 11. (생 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질병 및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한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예방접종(이하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2. 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제3조(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 ① ~ ② (생 략)
- ③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DTaP), 4개월(DTaP), 6개월(DTaP)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 생후 15개월~18개월(DTaP), 4세~6세(DTaP), 11세~12세(Tdap)에 3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단,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Tdap 백신을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백신으로 대체 가능)
- ④ ~ ⑨ (생 략)
- ⑩ A형간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개월~23개월에 1차 접종 후, 6개월~12개월(또는 6개월~18개월) 뒤에 2차 접종을 실시한다.
- ⑪ ~ ⑫ (생 략)
- ⑬ 인플루엔자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13세 영유아 및 어린이
 - 임신부
 - 표준접종시기
 - 매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⑭ ~ ⑮ (생 략)

4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해 고양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등의 대상에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안건번호 : 의견25-0409 /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 회신일자 2025. 12. 19.]

◇ **질의요지**

-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해 고양시의회 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등의 대상에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24. 2. 8. 의견제시 24-0016 참조).

먼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고양시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수탁기관변동의 경우, 즉 이 사안과 같이 위탁기간의 종료로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각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조제4호 참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탁기관변동에 관한 동의안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항에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제1호), 위탁사무의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내용(제2호), 위탁기간(제4호), 비용 산출내역(제5호) 등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수탁기관 선정방식(제3호)만 동의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동의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결과는 시의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5. 7. 30. 의견제시 25-0176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법제처 2023. 7. 28. 의견제시 23-0297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양시조례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8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고양시조례에서 시장이 민간위탁에 관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실상 시의회에서 사무를 어느 기관에 위탁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사안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 대상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3. (생략)
- 4. “수탁기관변동”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5. (생략)

제5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생략)
- ③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2.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내용
- 3.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4. 위탁기간
- 5. 비용 산출내역
- 6. 그 밖의 참고사항

④⑤ (생략)

제7조(선정 방법)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⑤ (생략)

제8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 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위원회의 경우 그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 2. ~ 4. (생략)
- ⑥ ~ ⑩ (생략)

5 **학교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투표기간과 같은 공휴일이 아닌 투표일의 경우에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학생에게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출결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직선거법」 제6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 의견25-0287 / 요청기관: 전라남도교육청 / 회신일자 2025. 12. 19.]

◇ 질의요지

- 학교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투표기간과 같은 공휴일이 아닌 투표일의 경우에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학생에게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출결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며,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그리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먼저,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가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1항에서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사무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국민의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이유는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학생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가목(각주: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생략)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 마. (생략)
6. ~ 7. (생략)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각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에 따르면,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의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공휴일이 아닌 투표일에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학생을 위해 조치하려는 학사일정 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학교의 수업일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는 매 학년 190일 이상(제1호)으로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7조에서도 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의 주제로 학교의 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학사일정의 조정에 관한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에서의 공휴일이 아닌 투표일의 경우에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학생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사항도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⑥ (생략)

경기도의회 주요 입법예고

- 의원발의안 22건 (제정조례안 15건, 개정조례안 7건)-

■ 제정조례안

1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27. / 발의자 : 이병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사후 치료를 넘어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 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현장 대응과 지역 맞춤형 예방 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임. 특히, 인구 규모와 생활권이 다양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광역 차원의 통합적인 손상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손상 예방부터 발생 이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손상 예방 및 관리의 정의를 따르고, 손상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나.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추진계획 및 방법, 지역 내 인력·시설 등 지원 방안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 마. 손상관리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2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27. / 발의자 : 이병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가. 경기도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 국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연도별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라. 필수의료인력의 양성·확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마.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촉진,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3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26. / 발의자 : 정경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가.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노인·장애인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
- 나. 그러나 센터 소속 직원은 공공성을 띠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기관 영양사에 비해 급여와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어 인력 이탈과 전문성 저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센터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 서비스의 질 향상과 도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4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23. / 발의자 : 정경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 신종 마약의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약류중독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 등 전 과정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교육·경 찰·보건 의료·사법·청소년복지 등 개별 기관이 각각 대응하는 구조로, 부처 간 정보공유 부족, 사례 연계 지연, 공동 대응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나. 청소년 마약 문제 역시 학교·교육청·청소년상담기관·지역사회가 동시에 대응해야 하나, 경기도 내에는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조기 개입과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마약류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부족과 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등도 우려되는 실정임.
- 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치료·재활 연계 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예방과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약류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마약류중독의 예방·조기대응·치료·재활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 체계를 반영하여 마약류중독,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및 관계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다. 마약류중독 대응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협의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교육·검찰·경찰·교정·의료·중독관리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민관 협력 구조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 마. 위원장의 협의회 대표 및 업무 총괄 역할과 부위원장의 보좌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협의회 회의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 및 임시회의 소집 요건을 규정함(안 제6조)
- 사.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건 사전 검토 및 협의회 논의 사항의 이행 점검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등

5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23. / 발의자 : 박명원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 제정이유

- 가. 경기도는 서해안 갯벌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갯벌생태계의 훼손 위험 증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오염원 유입, 생태교란종 확산, 복원 필요지 증가 등 다양한 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나. 또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다. 이에 갯벌관리구역 관리, 갯벌생태계 조사·보전조치, 갯벌복원사업 지원, 갯벌생태관광 진흥,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갯벌생태마을 육성 등 경기도의 책무와 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갯벌등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경기도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갯벌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오염원 차단, 교란생물 제거, 갯벌복원사업, 갯벌생태관광 육성, 청정갯벌 운영지원, 갯벌생태마을 조성지원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갯벌등 보전·관리 정책 자문을 위해 「경기도 갯벌보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구성·운영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바. 갯벌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연구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6 경기도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22. / 발의자 : 이석균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제정이유

- 가.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단위의 체계적 활동 기반이 필요해지고 있음.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는 통일교육, 시민 홍보, 통일 문화 확산, 탈북민 지원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이나,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 제도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 나. 이에 본 조례안은 협회회의 통일·평화 관련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정산·성과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도와 시군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통일·평화 활동의 지역 확산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의 공익적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통일 의식 향상과 평화통일 기반 확충,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협의회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 절차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라. 협의회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함(안 제7조).

7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랩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20. / 발의자 : 윤홍식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 제정이유

- 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물리적 객체와 결합하는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분야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나. 경기도는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조례 제8468호, 2025. 5. 7. 시행)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테스트 장비, 실증 공간 및 안전 인증 지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 특히 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 피지컬 AI 제품은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과 안전성 인증이 필수적이거나,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라. 본 조례는 연구개발 장비, 성능시험 공간, 안전인증 등을 종합 지원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랩'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의 실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피지컬 인공지능의 수요처가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증 랩을 설치하고, 필요 시 권역별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고가 장비 및 시뮬레이션 SW 공유, 테스트베드 운영, 신뢰성 검증 컨설팅,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 기능을 명시함(안 제6조)
- 마. 시설·장비 이용에 따른 사용자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실증 랩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두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인공지능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아.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전문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8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19. / 발의자 : 이상원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 제정이유

- 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및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나.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관리비의 구조적 절감과 탄소 중립 기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공용 관리비 지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9 경기도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19. / 발의자 : 이홍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 제정이유

- 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사고 예방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현재는 관련 제도 기반이 부족하여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음.
-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 장치의 설치 지원, 효과 평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령운전자 및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구조·성능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하여 설치 지원 및 기술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설치 지원 장치의 성능·안전성 및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설치 지원 장치의 성능·안전성 및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10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19. / 발의자 : 이재명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제정이유

- 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자리 변화, 노동환경 변화, 노동권 보호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인공지능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시 노동권 보호를 규정(안 제4조).
- 나. 인공지능 관련 노동자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5조).
- 다. 인공지능 기반 근로자 감시·통제 시스템의 남용 방지(안 제6조).
- 라.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11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19. / 발의자 : 이상원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 제정이유

- 가.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 및 구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이후의 안정적인 주거 형성과 경기도 내 정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나. 주거 여건은 신혼부부의 생활 설계와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지원 제도만으로는 변화된 금융 환경 속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 이에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와 구입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 부담 없이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제5조).
- 다. 지원 대상 요건과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주택 임차 및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8조).
- 마. 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 자격 상실 시의 지원 중지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즉시 환수 조치를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 바. 지원 중지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과 사무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사. 시·군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및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제14조)

12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19. / 발의자 : 장대석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 가. 경기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2026년 1월 기준 약 24만여 대로, 전국 승강기 설치 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업무시설·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걸쳐 설치되어 있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
- 나.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민 대상 안전 홍보 및 인식 제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고, 도민 대상 안전 홍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 홍보·교육 및 관계 기관과의 정책 협력 등 승강기 안전관리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3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19. / 발의자 : 김근용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 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의 대부분은 폐지로 매각되고 있어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한 지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도서 기증이나 재활용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으나, 한편으로 기증·재활용 대상 도서를 선별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공간 마련과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점 역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한이 되고 있음.
- 나. 이에 도서 기증과 재활용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서관의 제적·폐기 예정 도서가 학생 개인·지역사회·국제교류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공헌 증대 및 공공성 강화와 도서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서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개인, 기관, 단체의 도서 기증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기증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기증 및 수증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아.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9조).

14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14. / 발의자 : 장대석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 가. 최근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대규모 정전 및 통신장애 등 서로 다른 재난이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 간 상호 연계로 피해 양상이 복잡·광역화되고 있음.
- 나.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시설, 교통망 등이 밀집된 광역자치단체로서 복합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와 도시기능 마비 등 사회적·경제적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조례는 개별 재난 유형별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난의 동시 발생이나 연쇄적 확산 등 복합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라. 이에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기반으로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과 재난 간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 대응 과정에서 복합재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복합재난의 개념을 정의하는 등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나. 복합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과 재난 간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복합재난 발생 시 기존 재난 대응 매뉴얼의 연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마. 복합재난 관련 사항 검토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15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8. / 발의자 : 김상곤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 제정이유

- 가.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전반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확대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나.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는 지속적인 운영·관리 체계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 보안 취약,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다. 이에 경기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확대 구축·운영에 필요한 운영 원칙과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기준 및 지침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운영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비된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올바른 활용을 위하여 정기간교육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개정조례안

1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6. 2. 2. / 발의자 : 장한별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6. 2. 2 / 발의자 : 윤충식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 개정이유

-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29. / 발의자 : 황대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개정이유

-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 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inker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29 / 발의자 : 김규창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5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29 / 발의자 : 유명일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6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27 / 발의자 : 김선희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 개정이유

- 가. 현행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교육 주체 간 인식 차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나. 또한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라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교실 내에서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음.
- 다. 그래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라.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 가치와 민주적 질서에 기반하여 균형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 나.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 신설.(안 제7조제5항 신설).
- 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등 연수 규정 신설(안 제10조제1항 신설).

7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6. 1. 20. / 발의자 : 최만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개정이유

- 가.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경기도 자체 평가에서는 하위등급을 받거나, 모집·제공 실적이 우수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최저점을 부여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나. 이에 보건복지부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의 현장점검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다. 덧붙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함(안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센터 및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도 소속 공무원이 현장점검과 서류검사를 거쳐 평가 결과와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월간 입법동향

- 발행일 : 2026년 2월
- 발행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 법제과
법 제 과 장 박 경 순
법제운영팀장 김 호 성
입 법 조 사 관 심 지 연 김 흥
- 연락처 : 031-8008-7285 (fax. 031-8008-7289)

※ 본 자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자료실 ▶ 의회간행물 ▶ 월간입법동향 페이지에서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